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점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,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가점을 실시함으로써 이미 가점을 실시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

아울러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중 직렬 및 직류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해 신설된 “기계시설, 전기시설” 직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중 연구사 및 지도사를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포함시킴(안 [별표8]제1호 1))

나. 법원공무원규칙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의 변경된 직렬과 직류를 수정하고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신설된 “기계시설, 전기시설” 직류를 추가함(안 [별표8의2]제1호 및 제2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8 제1호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(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연구사 및 지도사) 별표 8의2 제1호가목 중 “「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제1항, 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제1호다목번호 1)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직렬란 “보안경비”를 “보안관리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호제1호다목 번호 1)의 보안경비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보안관리

보안

별표 8의2 제1호제1호라목번호 1)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직렬란 및 같은 표 제1호제1호라목 번호 1)의 방호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직렬란 중 “방호”를 각각 “보안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제1호라목번호 2)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직렬란 “운전”을 “관리”로 하며, 같은 표 제1호제1호라목 번호 2)의 운전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

원의 직류란 “운전”을 “운행관리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 중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제1항,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”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조제1항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제1항의 번호 2)의 시설관리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설관리
기계시설
전기시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 관한 적용례) 별표8 제1호 가목 1)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등의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51